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위탁자 겸 수익자 _____(이하 '위탁자'라 함),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수탁자'라 함), 우선수익자(제5조 제1항에 따라 추후 지정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우선수익자'라 함)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 또는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및 정의)

① 본건 신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원도급사(각 용어의 상세한 내용은 제3항에서 정의되며, 이하 같다)는 본건 사업에 관하여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인 바,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사업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위탁자는 다시 장비업자, 자재업자 등 협력사 및 근로자(이하 포괄하여 "협력사 및 근로자")와 본건 사업 관련 계약(재하도급계약, 공급계약 내지 근로계약 등을 말하며, 이하 "약정서")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추진 중이다.
2. 원도급사와 위탁자는 1.에서 정한 각 계약들에 따른 대금의 실효적 지급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또한 위탁자는 동 시스템에 따른 지급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와 이 신탁계약(그에 따른 신탁을 이하 "본건 신탁")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본건 신탁은, 위탁자가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본건 신탁의 우선수익자를 제1항의 협력사 및 근로자로 지정함으로써 협력사 및 근로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자는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보관·관리·운용하며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이하 "신탁목적물" 또는 "신탁재산"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건 사업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으로서 발주자와 수급인으로서 원도급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관련된 일체의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총칭하며, 그에 대하여 추가, 수정, 변경된 계약을 포함한다(그 내역은 별표 3-1 양식에 따라 송부한 통지서 또는 별표 3-2 양식에 따른 통지서 및 승낙서상 하도급계약내역 참조).
2. "발주자"라 함은 본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을 말하며, 그 내역은 위 1.의 하도급계약내역에서 정한 바와 같다.
3. "본건 사업"이라 함은 원도급사 및 수탁자가 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 하며, 상세한 정의는 세부사항 제1조 제3항에 따른다)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사업을 말한다.
4. "원도급사" 또는 "시공사"라 함은 본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그 내역은 위 1.의 하도급계약내역과 같다.
5. "하도급계약"이라 함은 원도급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사에게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에 체결되는 일체의 하도급공사 용역(위탁)계약을 총칭하며, 그에 대하여 추가, 수정, 변경된 계약을 포함한다. 그 내역은 위 1.의 하도급계약내역에서 정한 바와 같다.
6. "하도급공사대금"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하도급공사 수행에 관한 대가 금원을 말한다. 한편, 하도급사가 하도급계약에 의거 원도급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또는 장래의 금전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7. "하도급사"라 함은 본건 사업에 관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를 말한다.
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본건 사업 관련 하도급공사대금, 협력사 및 근로자에 대한 대금의 실효적 지급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도급사가 도입기업으로, 하도급사가 협력기업으로 회원가입하여 운용하는 '노무비닷컴 (www.nomubi.com)'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노무비닷컴' 시스템의 내역은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가 회원가입시 교부 받은 노무비닷컴 약관 기재와 같다.
9. "전문(電文)"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정한 전자적 장치 중 노무비지급 전산신스템상 지급이체 전문 등의 송수신 및 신탁거래를 위하여 수탁자와 위탁자가 별도약정한 전용망을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10. "등록계좌"라 함은 본 계약의 (우선)수익권 지급을 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서 지정한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말한다.
11. "원도급사 직접지급사유"라 함은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

5-14-0239(16-1)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가. 위탁자가 지급불능상태(지급정지 등)에 있거나, 그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가 신청되거나 그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그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어 주채권은행이 위탁자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소집을 금융채권자에 통보한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다. 위탁자에 대하여 해산신청, 법원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라. 위탁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등)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마. 원도급사가 약정서상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공사대금(이하 "재하도급공사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원도급사와 위탁자, 우선수익자간 합의한 경우

바. 위탁자의 타 사업장 체불이력이 확인되거나 사회보험료 등이 연체되는 경우

사. 위탁자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원도급사의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 또는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원도급사가 판단하는 경우

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하도급공사대금(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수익자의 역무 등 제공 발생 후 익월 말까지 재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우선수익자가 원도급사에게 재하도급공사대금(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차. 기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조 (신탁금액)

①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이 에스크로신탁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총합으로 한다.

②이 신탁계약은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수탁자가 현금을 수령하여 확인하였을 때 또는 계좌이체로 에스크로신탁계좌를 통해 입금되어 신탁원장에 입금이 기록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③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3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신탁기간 만료시 재산교부 가능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②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신탁기간 종료시까지 신탁잔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⑤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4조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신탁목적물의 수익자 : 위탁자
- 신탁목적물의 우선수익자 : 우선수익자

5-14-0239(16-2)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제5조 (우선수익자)

①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하기로 한다.

1. 이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본건 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위탁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협력기업으로 회원가입하기로 한다(원도급사는 동 시스템상 도입기업으로 회원가입함).
2.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수탁자가 위 1호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위탁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본건 사업 협력사 및 근로자를 통보(전문 수신)받은 때"에, 해당 협력사 및 근로자가 본건 신탁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우선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수익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위탁자의 수익권에 우선하는 우선수익권을 가진다.

③우선수익자가 갖는 우선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제 채무, 지연이자, 손해금으로 한다. 다만,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 한도는 수탁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전문으로 통보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수탁자는 제4항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목적물을 지급한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여부 및 지급내역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노무비닷컴)으로 통지한다.

제6조 (수익자의 수익권)

①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권을 가진다.

②위탁자의 수익권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순위에 따라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 남은 신탁재산을 지급받을 권리로 한다.

③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수익권에 대한 지급)

①수탁자는 신탁기간 동안 제2항에서 정한 매 지급일 마다 에스크로신탁계좌 입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을 지급한다. 한편, 제1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이 지급일 이외의 날에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기재된 비용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조세
   나. 수탁자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급받을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2. 제5조 제3항 소정의 수익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그 금액의 확정 및 지급절차는 아래 제2항에 따른다.
3. 제6조 제2항 소정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그 금액의 확정 및 지급절차는 아래 제2항에 따른다.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익권에 대한 수익의 지급절차 및 지급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 지급일은, 본건 사업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이 에스크로신탁계좌에 입금된 날 이후의 날(입금일 당일 포함)로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따라 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일로 확정된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지급일로 한다.
2.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 금액은, ⅰ) 우선수익권의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ⅱ) 수익권의 경우 제1항 1호 및 2호 금액의 지급 완료 후 남은 금액으로 한다. 그 확인을 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 1호 및 2호에 따라 확정된 지급일에 확정된 금액을 해당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에게 해당 수익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의 방식은 수탁자가 에스크로신탁계좌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각 이체하는 방식에 의한다.
4. 어느 지급일에 에스크로신탁계좌 입금액이 우선수익자 전원에 대한 수익 지급에 부족한 경우, 위탁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는 전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5-14-0239(16-3)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③한편, 원도급사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원도급사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에스크로신탁계좌 입금액으로 원도급사의 지급지시에 따라 수익권을 지급하기로 한다. 원도급사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익권에 대한 수익의 지급절차 및 지급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 지급일은, 본건 사업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이 에스크로신탁계좌에 입금된 날 이후의 날(입금일 당일 포함)로서 원도급사가 통지하는 날 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원도급사에 의하여 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일로 확정된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지급일로 한다.
2. 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 금액은, 원도급사가 위 1.에 따라 통지한 금액 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원도급사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그 확인을 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로부터 제출 받은 직불동의서(공사명, 직접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 또는 우선수익자로부터 제출 받은 직불요청서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수탁자는 위 1호 및 2호에 따라 확정된 지급일에 확정된 금액을 해당 우선수익자에게 해당 수익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이를 위하여 동 금원을 원도급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 지급의 방식은 수탁자가 에스크로신탁계좌에서 원도급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각 이체하는 방식에 의한다.
4. 어느 지급일에 에스크로신탁계좌 입금액이 우선수익자 전원에 대한 수익 지급에 부족한 경우, 원도급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는 전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④우선수익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우선수익권에 대한 지급시 원천징수 업무는 위탁자가 담당하기로 한다. 위탁자는 근로자인 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시 원천징수 관련 사항을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처리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본 조에 따라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동 지급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준)

① 제7조에 따른 지급은 수탁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지급이체 전문을 수신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 동 전문은 수탁자의 영업일 00:30-17:30 사이에 수탁자에게 송신되어야 한다. 다만, 추후 수탁자의 상품운용방법 변경에 따라 전문 송신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②어느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등록계좌에 잔액증명발급 등으로 입금제한이 있을 때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위탁자에게 입금제한 사실을 통지한 후, 해당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 및 수탁자는 합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지급이체 전문은 동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약관에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이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는 영업점 창구 거래로 가능하며, 지급잔액이 없는 경우(금0원인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다. 단 위탁자는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공사대금 관련 미수잔액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에 자필로 적어 신탁재산의 운용지시하고,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5-14-0239(16-4)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④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서 운용방법이 하나은행 정기예금으로 지정 운용 지시하는 경우에는 세부 상품으로 "수시지급식"과 "만기지급식" 중 사전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협의한후 우선수익자의 전문을 통하여 통지하는 방식으로 수탁자는 운용한다.
⑥제2항에서 위탁자의 별도 운용지시 및 제4항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요구는 위탁자의 전문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 (운용내역 통보 등)
①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위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계약서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운용내역 통보방법	☐ 자택우편, ☐ 직장우편, ☐ 전자우편(E-mail), ☐ 그 밖의 전자통신(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 ☐ 통보생략(불원) 위탁자 : _____ (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 12 조에 따라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으로 그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서 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②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 ·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 ·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 (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14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5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6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5-14-0239(16-5)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제17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다음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약정서별로 계산한다.

신탁보수 = 신탁원본 평균잔액 × 연 (특약에서 정함)%

신탁원본 평균잔액이라 함은 매일의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다만. 제10조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정기예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우선)수익권 행사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지급하는 신탁원본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약정서별 담보금액이 입금된 날 또는 직전 신탁보수 차감일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신탁보수 수령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신탁보수를 제17조에서 정한 약정서별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한다.

제18조 (이익계산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1. 매분기말 마지막 영업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3.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정기예금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정기예금 만기일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한다.

1. 제10조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발행어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서의 신탁원본 전체에 대하여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제10조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정기예금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선)수익권 행사로 지급하는 해당 약정서별 신탁원본에 대하여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③ 신탁이익의 계산은 에스크로신탁계좌 입금일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조세 및 비용)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충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한다.

제20조 (중도해지)

①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잔존 신탁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제18조에 따라 신탁이익을 계산하며, 수탁자는 제17조에서 정한 신탁보수 이외에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21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등)

①이 신탁계약은 제3조의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종료하며, 이 경우 지급은 제7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③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와 우선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와 우선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위탁자와 우선수익자는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⑦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목적물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 료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22조 (양도 및 담보제공)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합의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일부해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은 제7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4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행된 증서·등록 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 (인감신고)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 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14-0239(16-7)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제27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의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운용자산이 하나은행 정기예금(만기지급식)으로 지정한 경우	나. 위 가.이외의 운용자산
신탁보수 = 신탁원본 평균잔액 × 연 ( ) %	신탁보수 = 신탁원본 평균잔액 × 연 ( ) %

제28조 (관계법규 등 준용)

①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9조 (관할법원)

①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제30조 (신탁계약)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신탁계좌)를 교부한다.

제31조 (개인정보의 제공 · 활용)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는 수탁자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건 사업 관련 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관련 계좌번호 등 포함)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이를 이 계약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하며, 개인식별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이 계약의 작성 및 체결, 본건 사업 진행 등의 목적으로 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당사자 및 전문 인력기관(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신탁사무위임계약상 신탁재산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본건 사업 종료일까지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32조 (기타 신탁계약 세부사항)

기타 이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한다.

제33조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정산 감정)

① 위탁자와 원도급사 사이에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신탁원본의 정산에 관한 이견 또는 정산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활한 신탁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위탁자와 원도급사가 합의한 전문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금전채권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정산 및 신탁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② 감정인의 선정은 수탁자의 업무규정에 따르기로 하며, 수탁자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문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한다.

③ 감정비용은 위탁자와 원도급사가 50%씩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하며,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감정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발생할 경우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신탁원본에서 최우선순위로 집행하기로 한다.

④ 금전채권신탁계약과 업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기로 한다.

5-14-0239(16-8)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신탁계약 세부사항

제 1 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① 하도급사로서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사이에 공사 현장마다 하도급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위탁자는 신탁계약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각 계약들에 따른 대금의 실효적 지급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또한 동 시스템에 따른 지급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와 다음과 같은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먼저, 원도급사는 위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원도급사가 각 공사 현장의 i) 발주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 및 ii) 공사대금입금계좌 개설은행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동 신탁의 제1종 수익자를 본건 신탁의 위탁자로 지정함으로써 하도급사로서 본건 신탁 위탁자가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하도급공사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한다.
2. 다음으로, 위탁자는 수탁자와 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금전채권신탁계약 제1종 수익권과 그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본건 신탁의 우선수익자를 제1항의 협력사 및 근로자로 지정함으로써 협력사 및 근로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위 1. 및 2.에서 정한 금전채권신탁계약 및 이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당사자들이 확정한 금액을, 수탁자가 동 시스템에서 확정된 지급일에 금전채권신탁계약 및 본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이 세부사항은, 위탁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과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권을 추가로 수탁자에게 신탁함으로써, 신탁계약 제1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목적을 더욱 실효적·안정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원도급사와 수탁자 사이에 금전채권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③이 세부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탁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달리 세부사항에서 정의되지 않는 한 세부사항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 함은 원도급사가 각 공사 현장의 i) 발주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 및 ii) 공사대금입금계좌 개설은행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내용으로 원도급사와 수탁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및 그에 대한 특약을 총칭한다. 이 신탁계약의 위탁자는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동 신탁의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된다.
2. "제1종 수익권"이라 함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제1종 수익권을 총칭한다.
3. "신탁대상자산"이라 함은 세부사항에 따른 신탁의 목적물인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제1종 수익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총칭하며, 그 내역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④위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자가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권의 수익자로 지정됨에 동의한다. 또한 위탁자는 금전채권신탁계약서 사본을 교부받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제 2 조 (신탁목적물의 추가, 변동 및 권리의 이전)

①세부사항은 신탁계약에 부수하여 신탁대상자산을 신탁계약상 신탁목적물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탁목적물로 추가되는 신탁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 변동될 수 있다.

1. 신탁계약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동안 위탁자가 원도급사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원도급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
2. 신탁계약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동안 원도급사가 수탁자와 체결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탁자를 제1종 수익자로 지정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보유하는 제1종 수익권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금전의 신탁에 추가하여, 세부사항에 의하여 신탁대상자산을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한다. 각 신탁대상자산의 본건 신탁목적물 추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수탁자에게 해당 하도급계약 및 그에 관한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하도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급공사대금채권, 제1종 수익권의 신탁(본건 신탁의 신탁목적물 추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기로 한다. 위 의사표시(통지서 또는 통지서 및 승낙서)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역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위 1.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위탁자는 해당 신탁목적물의 채무자인 원도급사와 수탁자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지서 또는 통지서 및 승낙서를 발송 내지 교부함으로써 채권 신탁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위 1. 및 2.에 따른 신탁 의사표시, 하도급계약 내역 및 대항요건 구비는 별표 3-1 통지서 또는 별표 3-2 통지서 및 승낙서 양식에 따르기로 한다.

③세부사항에 따른 각 신탁대상자산의 신탁은, 해당 신탁대상자산 별로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고 제2항의 통지서 또는 통지서 및 승낙서가 수탁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수탁자에게 신탁되는 신탁대상자산에는 지연배상금 등 신탁대상자산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금전수입을 모두 포함한다.

⑤신탁계약(세부사항 포함)의 체결로써 수탁자에게 신탁된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과 신탁된 신탁대상자산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되,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구성한다.

⑥신탁개시일 이후 신탁대상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회수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동 회수금원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신탁된 신탁대상자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수탁자는 에스크로신탁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아니한 신탁원본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의 지급의무 및 기타 어떠한 지급의무 내지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신탁양도의 대항요건)

①위탁자는 원도급사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즉시 원도급사에게 해당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신탁양도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서(별표 3-1에 따름) 또는 확정일자부 통지서 및 승낙서(별표 3-2에 따름)를 발송 또는 교부하고 그 발송본 내지 교부본을 수탁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위탁자는 원도급사로 하여금 해당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신탁(본건 신탁의 목적물 추가)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금을 모두 수탁자가 지정한 에스크로신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원도급사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즉시 수탁자에게 해당 하도급계약에 관한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른 제1종 수익권의 신탁양도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서(별표 3-1에 따름) 또는 확정일자부 통지서 및 승낙서(별표 3-2에 따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대항요건 구비 및 유지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신탁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 및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하도급계약이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지 기타 소멸하거나 그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계산 및 보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대상자산의 잔액 및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해당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수익권에 대한 지급)

세부사항상 신탁목적물의 추가에 따른 우선수익권 및 수익권에 대한 지급은, 신탁계약 제7조에 따른다.

제 6 조 (신탁대상자산의 내용변경)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신탁대상자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일부해지)

위탁자가 본건 신탁기간 중 어느 공사 현장 관련 하도급공사대금을 신탁계약(세부사항 포함) 및 금전채권신탁계약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합의하여 해당 신탁대상자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일부 해지하여야 한다.

5-14-0239(16-10)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제 8 조 (신탁계약의 적용)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이 적용된다.

제 9 조 (신탁사무위임계약의 체결)
수탁자는 세부사항 제3조 대항요건 구비와 관련한 일부 사항을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신탁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세한 업무범위 및 방법은 신탁사무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한편, 본건 신탁사무위임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관리자에 대한 보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주 소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성 명 (인)

우선수익자(제5조 제1항에 따라 추후 지정)
주 소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성 명 (인)

수탁자
주 소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성 명 (인)

5-14-0239(16-11)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별표1]

신탁자금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1.부터 25.까지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	6. 그 밖의 금융채	11. 보증어음	16. 양도성예금증서	21. 그 밖의 유가증권
2. 콜론	7. 지방채	12. 자유금리기업어음*	17. 신용카드채권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3. 환매조건부채권	8. 사채	13. 표지어음	18. 개발신탁수익증권	23. 증권지수의 선물거래
4. 국 채	9. 주식	14. 중개어음	19. 공사채형수익증권	24. 증권의 옵션
5. 통화안정증권	10. 외화증권	15. 발행어음	20. 주식형 수익증권	25. 그 밖에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14-0239(16-12)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지점 앞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_____
- 계 좌 번 호 : _____
- 운용지시 내용 : 신탁자금 운용방법[별표1]중에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세부내용」란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자금 운용방법 (별표1) (운용대상의 종류)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_____년 _____월 _____일

위탁자	성 명 : _____ (인/서명)	(법정)대리인	성 명 : _____ (인/서명)
	주 소 : _____		주 소 : _____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별표3-1]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양도(신탁) 통지서

수 신 : 1. _____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채무자 지위. 이하 "원도급사")
2. 주식회사 하나은행(금전채권신탁계약 수탁자 지위. 이하 "수탁자")
참 조 :
제 목 :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제1종 수익권 양도(신탁) 통지

1. 하도급사로서 당사는, 원도급사와 사이에 <별첨 하도급계약 내역> 기재 계약서(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하며, 그 갱신·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합니다)를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도급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채권(이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원도급사는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및 그에 대한 특약(이하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 하며, 그 갱신·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합니다)을 체결하여 원도급사가 위 하도급계약 공사의 발주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였는 바(각 용어의 정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르기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 당사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의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당사는 제1종 수익권(이하 "제1종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당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에스크로신탁계약 수탁자의 지위에서 "하나은행")과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세부사항을 포함하며, 이하 총칭하여 "에스크로신탁계약")를 체결하여, 당사가 신탁기간 동안 원도급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수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제1종 수익권을 하나은행에 양도(신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금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채권과 그에 관한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권을 에스크로신탁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에 양도(신탁)하며, 이를 귀사들에 통지합니다.

4. 이에 귀사들에 대하여 본 통지서를 송부하오니, 향후 금번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제1종 수익권의 지급금은 모두 양수인인 하나은행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지급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통 지 인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대표이사 (인)

[확정일자]

별첨

하도급계약 내역

- **건설사업 명칭 :**
- **발주자 :**
- **시공사(원도급사) :**
- **하도급사 :**
- **하도급계약 체결일 및 명칭 : 20 년 월 일자 [ ]계약서**
- **하도급 공사기간 :** 수 기 작 성
- **하도급 공사대금 금액 :** 수 기 작 성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별표3-2]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양도(신탁) 통지서 및 승낙서

수 신 : 1. _____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채무자 지위. 이하 "원도급사")
2. 주식회사 하나은행(금전채권신탁계약 수탁자 지위. 이하 "수탁자")
참 조 :
제 목 :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제1종 수익권 양도(신탁) 통지서

1. 하도급사로서 당사는, 원도급사와 사이에 아래 <하도급계약 내역> 기재 계약서(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하며, 그 갱신·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합니다)를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도급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채권(이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내역>

■ **건설사업 명칭 :**
■ **발주자 :**
■ **시공사(원도급사) :**
■ **하도급사 :**
■ **하도급계약 체결일 및 명칭 : 20 년 월 일자 [ ]계약서**
■ **하도급 공사기간 :** 수 기 작 성
■ **하도급 공사대금 금액 :** 수 기 작 성

2. 또한, 원도급사는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및 그에 대한 특약(이하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 하며, 그 갱신·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합니다)을 체결하여 원도급사가 위 하도급계약 공사의 발주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였는 바(각 용어의 정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르기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 당사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의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당사는 제1종 수익권(이하 "제1종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당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에스크로신탁계약 수탁자의 지위에서 "하나은행")과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세부사항을 포함하며, 이하 총칭하여 "에스크로신탁계약")를 체결하여, 당사가 신탁기간 동안 원도급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수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제1종 수익권을 하나은행에 양도(신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금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채권과 그에 관한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권을 에스크로신탁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에 양도(신탁)하며, 이를 귀사들에 통지합니다. 이에 동 양도(신탁)에 <다음>과 같이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수탁자의 경우 금전채권신탁계약 제13조 제3항의 동의로 갈음하기로 합니다).

4. 향후 금번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제1종 수익권의 지급금은 모두 양수인인 하나은행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지급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통 지 인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대표이사 (인)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다 음

1. 당사는 귀사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20[ ]년 [ ]월 [ ]일자 통지(제목 :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제1종 수익권 양도(신탁) 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름}의 양도(신탁)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았습니다. 당사는 귀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보유하는(/보유하게 되는) 모든 이의를 보류(유보)하고 이를 승낙하며, 위 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승낙서 교부일 현재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압류, 가압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 승낙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에 관한 업무는 금전채권신탁계약 제25조(신탁사무의 일부 위임)에 따라 나이스디앤알 주식회사에 위임하기로 하며, 본 승낙서를 별첨 문서로 하여 나이스디앤알 주식회사가 날인한 <확인서>가 본 승낙서와 연결된 하나의 문서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 ]월 [ ]일

승 낙 인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대표이사 (인)

* 첨부 :

[확정일자]

5-14-0239(16-16) (2026.06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42호(2026.04.21)

하나은행